

티웨이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개정판 『2017.08.07.』 발행

개정 기록표

개정 번호	개정 일자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부서
0	25 MAY 2011	최초 제정	판매팀
1	15 JUL 2013	1차 개정 (수하물 규정변경)	영업지원팀
2	27 AUG 2013	2차 개정 (운임 및 요금의 적용변경 외)	영업지원팀
3	01 DEC 2013	3차 개정 (총칙 변경 외)	영업지원팀
4	01 FEB 2015	4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적용)	영업지원팀
5	17 JUN 2015	5차 개정 (항공사의 책임한도)	영업지원팀
6	17 DEC 2015	6차 개정 (항공사의 책임)	예약판매팀
7	28 MAR 2016	7차 개정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영업지원팀
8	10 MAY 2016	8차 개정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영업지원팀
9	15JUL2016	9차 개정 (항공권의 유효기간)	영업지원팀
10	01JUN2017	10차 개정 (총칙 변경 외)	영업기획팀
11	07AUG2017	11차 개정 (예약 및 경로변경 외)	영업기획팀

유효 페이지 목록

페이지	개정번호	개정 일자
표지	4	01 FEB 2015
개정 기록표	6	17 DEC 2015
유효페이지 목록	6	17 DEC 2015
목차-1	4	01 FEB 2015
목차-2	4	01 FEB 2015
목차-3	4	01 FEB 2015
제 1 장 총칙		
1-1	10	01 JUN 2017
1-2	10	01 JUN 2017
1-3	10	01 JUN 2017
1-4	0	25 MAY 2011
1-5	0	25 MAY 2011
1-6	10	01 JUN 2017
1-7	10	01 JUN 2017
제 2 장 항공권		
2-8	10	01 JUN 2017
2-9	0	25 MAY 2011
2-10	10	01 JUN 2017
2-11	10	01 JUN 2017
제 3 장 운임 및 요금		
3-12	3	01 DEC 2013
3-13	0	25 MAY 2011
3-14	10	01 JUN 2017
3-15	10	01 JUN 2017
3-16	10	01 JUN 2017
제 4 장 예약 및 경로변경		
4-17	3	01 DEC 2013
4-18	10	01 JUN 2017
제 5 장 여객의 운송		
5-19	0	25 MAY 2011
5-20	10	01 JUN 2017
5-21	0	25 MAY 2011
제 6 장 환불 및 환불수수료		
6-22	10	01 JUN 2017
6-23	10	01 JUN 2017

페이지	개정번호	개정 일자
제 7 장 환불 및 환불 수수료		
7-24	0	25 MAY 2011
7-25	0	25 MAY 2011
7-26	0	25 MAY 2011
7-27	10	01 JUN 2017
7-28	10	01 JUN 2017
7-29	1	15 JUL 2013
7-30	2	27AUG 2013
7-31	10	01 JUN 2017
7-32	0	25 MAY 2011
7-33	3	01 DEC 2013
7-34	0	25 MAY 2011
7-35	0	25 MAY 2011
제8장 책임		
8-36	10	01 JUN 2017
8-37	10	01 JUN 2017
8-38	10	01 JUN 2017
8-39	10	01 JUN 2017
8-40	10	01 JUN 2017
8-41	10	01 JUN 2017
8-42	10	01 JUN 2017
8-43	10	01 JUN 2017
Approved by C.E.O		
		

목 차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정의)
- 제 2 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 제 3 조 (비치)
- 제 4 조 (여객의 동의)
- 제 5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제 6 조 (항공사 직원의 지시)
- 제 7 조 (운항상의 변경)

제 2 장 항공 권

- 제 8 조 (항공권의 발행)
- 제 9 조 (항공권의 유효성)
- 제 10 조 (유효기간)
- 제 11 조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제 3 장 운임 및 요금

- 제 12 조 (운임 및 요금의 적용)
- 제 13 조 (왕복 운임)
- 제 14 조 (무임 및 할인)
- 제 15 조 (2 개 이상 좌석 사용시의 운임)
- 제 16 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제 4 장 예약 및 경로변경

- 제 17 조 (예약)
- 제 18 조 (여정, 예약자 성명변경 및 여정변경 수수료)

제 5 장 여객의 운송

제 19 조 (여객의 공항 도착)

제 20 조 (운송의 거절 취소 및 제한)

제 21 조 (부정 탑승)

제 6 장 여정변경 및 환불수수료

제 22 조 (환불)

제 23 조 (여정변경 및 환불 수수료)

제 7 장 수 하 물

제 24 조 (수하물의 운송)

제 25 조 (수하물 내용조사)

제 26 조 (수하물로써의 운송제한 물품)

제 27 조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

제 28 조 (기내 무료 휴대품)

제 29 조 (초과 수하물 요금)

제 30 조 (초과 수하물 요금의 환불)

제 31 조 (특정 동물의 운송)

제 32 조 (종가요금)

제 33 조 (위탁 수하물의 인도)

제 34 조 (수하물표 분실)

제 35 조 (미인도 수하물 처분)

제 8 장 책임

제 36 조 (항공사의 책임)

제 37 조 (수하물 손해배상 청구기한)

제 38 조 (항공사의 책임한도액)

제 39 조 (여객의 배상책임)

제 40 조 (제소기한)

제 41 조 (약관의 정보)

제 42 조 (표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정의)

본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항공여객운송(이하 '운송' 이라 한다)" 이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와 목적지 및 도중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위치하는 항공운송을 말한다.
2. "항공권" 이라 함은 (쥬티웨이항공(이하 '항공사'라 한다) 또는 티웨이항공이 지정한 대리인(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이 본 운송약관에 따라 국내항공운항 노선상의 여객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전자증표 또는 종이증표를 말한다.
3. "항공권 예약 발권 확인서" 라 함은 항공사가 전자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승객에게 발행하는 승객 성명, 항공편, 고지사항을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일반운임" 이라 함은 국내선 구간의 항공운송을 위하여 항공사가 정한 비할인 정규 여객운임을 말한다.
5. "스마트운임"이라 함은 항공사가 일반운임을 기준으로 예매시점에 따라 적용운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여객운임을 말한다.
6. "이벤트운임"이라 함은 항공사가 특별히 정해진 기간에 한하여 항공사가 정하는 별도의 판매조건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특별운임을 말한다.
7. "왕복여행" 이라 함은 한 지점으로부터 여행을 개시하여 그 출발 지점에 되돌아 오는 여행으로서 왕편 및 복편 운임의 동일여부를 불문하고 왕복 편을 동일 경로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수하물" 이라 함은 여객이 여행시 휴대하거나 탁송을 의뢰한 소지품 및 물품을 말한다. 단, 동일한 품목을 다량 운송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하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9. "위탁수하물" 이라 함은 여객이 여행시에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제출한 물품에 대해 항공사가 접수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10. "휴대수하물" 이라 함은 위탁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11. "초과수하물" 이라 함은 항공사가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을 말한다.
12. "수하물표" 라 함은 위탁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3. "단체여객" 이라 함은 동시에 동일 구간을 여행하는 10명 이상의 여객으로 사전에 동일 단체로 예약이 신청된 여객을 말한다.
14. "성인" 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5. "소아" 라 함은 만 2 세 이상 만 13 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6. "유아" 라 함은 만 2 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7. "공항이용료"라 함은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를 말한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1. 본 약관은 항공사의 국제여객 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국내 정기와 부정기의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하는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단, 전세 운송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세운송계약이 우선 적용되며, 전세운송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약관을 적용한다.
2. 본 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는 본 약관 조항에 우선하여 해당 특약을 적용한다.
3.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여객의 출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의한다.
4. 항공사는 무상운송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가진다.
5. 제 1 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티웨이항공의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법령 개정이나 정부 지침, 서비스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로 운송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 전 발권한 승객에게는 변경된 운송약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비치)

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가. 운임표
- 나. 요금표
- 다. 운송약관
- 라.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제 4 조 (여객의 동의)

여객은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함으로써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본 약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2. 본 약관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과 관련된 소송은 그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또한 그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그의 소송절차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다.

제 6 조 (항공사 직원의 지시)

여객은 항공기에 탑승 및 하기하거나 공항 또는 항공기내에서 행동을 하거나 수하물을 탑재 또는 하기 등 항공기 이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항공사 직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 (운항상의 변경)

1. 항공사는 법령, 정부규정, 정부기관의 명령, 요구 또는 지시, 기기의 고장(항공기를 포함하여 공항의 제반 시설 및 기기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기기를 포함한다), 악천후, 천재지변, 쟁의, 파업, 폭동, 소요, 동란, 전쟁, 적대행위, 국제관계의 불안정, 출입항 금지, 공항사정, 항공기 접촉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기치 못한 정비,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항공사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난점,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사전 예고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운항시간변경

나. 항공편 취소

다. 운항 중지

라. 발착지 변경

마. 불시착

바. 운송할 여객 수 제한

사. 탑재된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하기

아. 여객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조치

2. 항공사는 제 1 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 제 22 조 제 3 항에 의하여 여객의 미탑승구간의 적용운임 또는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에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공사의 고의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항공사는 본 약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상을 한다.

제 2 장 항 공 권

제 8 조 (항공권의 발행)

1. 항공사는 여객이 소정운임을 지불하거나 또는 항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신용거래 조건에 의하여 항공권을 발행한다.
2. 여객은 항공권 발행에 필요한 성명, 성별,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항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항공권의 유효성)

1. 항공권은 명의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여객이 항공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운송증권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여객 당사자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특정기간의 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내의 운송에 한하여 유효하다.
4. 항공권은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운송조건(종이증표는 해당증표에 기재된 운송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운송상 유효하다.

제 10 조 (항공권의 유효기간)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전체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 년이고 여행 개시 후에는 최초 출발일로부터 1 년이다.

제 11 조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1. 제 10 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좌석이 미 확약된 항공권 소지 여객이 예약신청 시 좌석부족으로 인하여 탑승이 불가능한 경우 좌석예약이 가능한 시점까지.
 - 나. 항공사 사정에 의한 항공편의 취소, 여객의 확약된 좌석의 제공 불능, 출발 또는 도착지로 예정된 지점에서의 기항 불가, 기타 운항시간표에 따른 정상적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운항이 가능한 시점까지
 - 다. 여객이 질병이나 기타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여행이 불가하여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시점까지.
2. 제 1 항 제 다 호의 경우, 항공사는 당해 여객을 실제로 동반하는 자의 항공권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한다.

제 3 장 운임 및 요금

제 12 조 (운임 및 요금의 적용)

1. 여객운임 및 요금은 항공사가 정하는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
2. 여객운임 및 요금은 당해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 또는 요금 총액 중 100 원 미만의 단수 액은 절상하여 처리한다.
4. 적용운임 및 요금은 여객이 구매하는 시점에 유효한 해당편의 출발일 운임 및 요금으로 한다.
5. 여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여정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지불된 운임 또는 요금이 변경될 시 적용운임의 차액을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제 13 조 (왕복 운임)

왕복운임은 각 편도 운임을 더한 운임으로 한다.

제 14 조 (유아 및 소아 운임)

1. 성인에 의하여 동반되고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는 성인 1 인당 1 인에 한하여 무임으로 한다.
2. 소아, 별도로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 또는 성인 1 인이 동반하는 유아 중 1 인을 초과하는 유아에 대하여는 해당 구간의 소아운임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단, 이벤트 운임 및 일부 스마트 운임에 대해서는 소아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15 조 (2 개 이상 좌석 사용시의 운임)

여객이 신체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2 개 이상의 좌석을 동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약하거나 공항 지점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좌석 1 석 당 승객이 구매한 운임과 동일한 운임의 100% 상당액을 징수한다.

제 16 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정부 당국, 공항 운영자 및 항공사가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서비스 수수료, 기타 발생하는 요금 등은 항공사가 정한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 4 장 예약 및 경로변경

제 17 조 (예 약)

1. 여객의 좌석 예약은 예약스케줄을 공시한 날로부터 접수하며, 항공권상에 확약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당해 예약이 유효하다.
2. 항공권 구입기한은 예약과 동시에 한다. 단, 단체의 경우는 별도로 규정한 지침을 준용한다.
3. 항공사의 홈페이지와 **예약센터**를 통한 예약은 출발 예정 시각 2 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다.
4. 항공사가 지정하는 시간까지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면, 당해 예약은 탑승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 없이 자동 취소된다.

제 18 조 (여정, 예약자 성명변경 및 여정변경 수수료)

1. 여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일자, 항공편, 구간 또는 목적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항공사 홈페이지와 **예약센터**는 출발예정 시각 2 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는 공항지점을 통해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약관 및 이와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 가능하다.
2. 여객 본인의 사정에 의한 여정 변경 시 항공사가 별도로 규정한 여정변경 수수료를 징수한다.
3. 개인 여객의 경우 탑승자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단체 여객의 경우 일정 인원내 대해 수수료 부과 후 탑승자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4. 여객이 철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탑승자가 동일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범주에 한하여 수수료 부과 후 철자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5. 여객 측 사정 이외의 사유에 의한 항공편의 취소, 여객의 확약된 좌석의 제공불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 기항지의 착륙불가의 경우 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여객 및 수하물을 좌석 제공 가능한 타 항공편 또는 타 운송수단으로 운임의 추징 없이 목적지까지 운송할 것
 - 나. 여객의 요청에 따라 여행일자, 항공편 또는 경로를 변경할 것.
 - 다. 본 약관 제 22 조 제 3 항 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행할 것.

제 5 장 여객의 운송

제 19 조 (여객의 공항 도착)

1. 여객은 좌석이 확보된 항공편의 출발예정 시각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관련기관 및 항공사 소정의 탑승수속을 마쳐야 하며 항공사는 항공편 출발예정시각 20 분 전까지 탑승수속(좌석배정 및 수하물위탁)을 마치지 못한 여객에 대하여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2. 항공사는 공항에 늦게 도착한 승객의 소정 수속완료를 기다리기 위하여 소정 출발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여객에 대하여는 본 약관 제 22 조 제 2 항에 의한 환불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운송의 거절 취소 및 제한)

1. 운송의 거절 권리

- 가. 항공사는 법령 또는 정부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해 여객의 운송 또는 예약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나. 항공사는 다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여객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중간지점에서 내리게 할 수 있다.
 - 1)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본 약관 제 7 조에 규정된 운항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 3)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여객의 신분, 연령, 신체 또는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제 3 자의 보조 없이 단독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타 여객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 5) 비행 중 타 여객 또는 기물 등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타 여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항공여행을 훼손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여객, 또는 항공사 직원에게 유, 무형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거래 상 심히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여 항공사의 공중서비스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여객으로서 항공사가 운송거절 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고한 경우 항공사는 그 여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 7) 탑승권 발급 등 탑승 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으로써 다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여객의 신원에 관한 항공사의 확인요구에 대하여 여객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항공사는 그 여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라. 초과판매 및 티웨이항공의 귀책으로 허용탑재량이 부족할 경우 티웨이항공은 자발적으로 탑승 유예 승객을 유도할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를 최소화하기 위한 티웨이항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탑승 유예 승객이 없어 비자발적 탑승 유예 승객이 발생할 경우, 운항에 필요하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예약이 확약된 승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을 선정한다. 단 이 경우, 유아를 동반한 승객 및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는 선정되지 않는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 자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의 운송 불이행 항목에 준하여 보상한다.

티웨이항공은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부득이하게 감소한 경우 변경된 항공기 허용 탑재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티웨이항공은 운항에 필요하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예약이 확약된 승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조건부 운송 인수

가. 항공사는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불구 또는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조건하에서 운송을 행한다.

나. 장애인, 임산부, 질환 자 또는 항공사의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여객은 **예약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에 항공사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고 항공사의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의 기계설비 및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3. 기내에서의 행위

가. 항공사는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 조치되거나 계속해서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다음 경우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될 수 있다.

- 1)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2) 기내에서의 제반 행위(흡연, 음주, 약물 복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

나. 위의 1)호에 언급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당해 여객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 21 조 (부정 탑승)

항공사는 다음각항의 경우, 부정탑승행위로 규정하고 탑승구간에 적용되는 일반운임의 2 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1. 무효항공권, 위조항공권, 타인명의 항공권 또는 타인이 분실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탑승한 경우
2. 항공사의 국내선 여객운임 할인대상자로 부정 신고하여 운임의 특별할인을 받고 탑승한 경우

제 6 장 여정변경 및 환불수수료

제 22 조 (환불)

1. 미사용 유효 항공권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환불한다.
 - 가. 항공권에 대한 환불신청은 동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항공사의 홈페이지, 예약센터 또는 공항지점을 이용하여 당사의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환불을 행하여야 한다. 단,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해당 대리점의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환불을 행한다.
 - 다. 환불은 항공권에 표시된 명의인 또는 환불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항공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의해 항공권이 결제·구매된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명의인에게 당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매출 취소 또는 결제구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불한다.
 - 라.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항공사는 이후 진정한 권리 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마. 항공사가 환불 시 여객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은 일체 사용하지 아니한 항공권의 경우 제 23 조에 의한 환불 수수료 및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본인 또는 법정 상속자 에게 환불하며, 일부를 사용한 항공권은 실제 지불한 운임 중에서 기 사용한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및 환불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여객 또는 여객의 직계가족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관련 증빙 제출 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은 항공사 사정에 의한 항공편의 취소, 여객의 예약된 좌석의 제공불능, 접속 불가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 기항지의 생략 또는 본 약관 제 7 조 및 제 20 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환불을 행한다. 단,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0 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가.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운임 및 요금전액을 환불한다.
 - 나. 목적지로 운송도중 어느 지점에서 운송이 중단되는 경우는 그 중단지점으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중단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한다. 단, 대체 교통수단이 제공될 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여정변경 및 환불 수수료)

1. 본인 사정에 의해 예약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 출발예정 시각 전까지 항공사의 홈페이지, 예약센터 또는 공항지점에 여정변경 또는 예약취소를 통고하여야 한다.
2. 여객 본인의 사정에 의한 여정 변경 또는 예약 취소 시 항공사가 별도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3. 출발 시각 이후 여정 변경 또는 예약취소 요청 시, 출발 시각 이전 수수료 외 예약부도 수수료를 별도로 추가 징수한다.

제 7 장 수 하 물

제 24 조 (수하물의 운송)

위탁 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항공기 탑재량 관계 또는 기타 항공사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객의 동의 하에 당해 수하물의 탑재가 가능한 타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제 25 조 (수하물 내용조사)

항공사는 항공 보안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수하물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 3 자의 입회 하에 검사할 수 있다.

제 26 조 (수하물로서의 운송제한 물품)

1. 항공사가 사전에 별도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여객의 수하물으로써 운송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가.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항공기에 탑재이동이 금지된 물품
 - 나. 항공기 탑승인원 또는 기타 재산상 위험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다. 운송 도중 파손의 우려가 있거나 부적절하게 포장된 물품
2.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견본, 서류 또는 기타 귀중품은 위탁 수하물으로써 운송할 수 없다.

제 27 조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

1. 일반석 위탁수하물은 15 킬로그램까지 무료로 한다.
2. 휴대수하물은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할 수 있는 크기에 한하여 삼면의 합이 115 cm 이내 이고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1 개에 한하여 무료휴대가 가능하며, 상기의 규격, 중량 및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위탁수하물로 취급하여 운송한다.
3.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는 위탁수하물 처리하여 운송한다.
4. 운임을 지불한 소아 또는 유아의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5. 본 약관 제 14 조 제 1 항에 정한 유아에 대하여는 본 조의 제 4 항 및 제 28 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자동차용 유아 좌석 1 개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무료 운송이 허용된다.

제 28 조 (기내 무료 휴대품)

1. 법률, 정부명령 또는 지시에 의하여 특별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여객이 보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 27 조 제 2 항에 추가하여 무료로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
 - 가. 서류가방 1 개
 - 나. 노트북 및 소형전자기기 1 개(MP3, PMP 등)
 - 다. 핸드백 또는 화장품 가방 1 개
 - 라. 외투, 모포 또는 덮개 1 개
 - 마. 소량의 독서물
 - 바. 비행 중 사용할 유아의 음식물
 - 사. 시각장애인 인도 견 또는 청각 장애인 보조 견 1 마리
 - 아. 신체장애인이 사용하는 목발, 의수, 의족
2. 제 1 항의 품목 이외의 물품은 적용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항공사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내에 휴대할 수 없다.

제 29 조 (초과 수하물 요금)

1. 본 약관 제 27 조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징수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다.
2. 초과수하물의 총 중량 산정 시 1킬로그램 미만 0.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은 1킬로그램으로 절상하고, 0.5킬로그램 미만의 중량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스포츠 수하물 등과 같은 특수수하물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규정한 별도의 수하물 요금이 부과된다.

제 30 조 (초과 수하물 요금의 환불)

1. 여객이 탑승 예정편의 출발시각 20 분 전까지 수하물 운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여객이 지불한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2. 여객이 제 1 항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수하물 운송을 취소할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항공사 사정에 의하여 여객과의 운송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31 조 (특정 동물의 운송)

1. 시각장애인 인도 견 또는 청각장애인 보조 견은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다음 조건에 의하여 무료로 운송한다.
 - 가. 여객이 동반하되, 별도의 좌석을 차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타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행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운송 도중 당해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경우에 당해 손해가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항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여객이 동반하는 애완동물은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내로 운송이 가능하다.
 - 가. 애완용 동물은 개, 고양이 또는 애완용 조류에 한한다.
 - 나. 애완용 동물은 반드시 별도의 운반용 용기에 수용되어 항공기에 탑재되어야 한다. 애완용 조류는 조류 전용 운반용기에 수용되어, 외부가 보이지 않는 검정 불투명 덮개가 조류용 운반용기 전체를 덮고 있어야 한다.
 - 다. 본 항에 의하여, 운송이 인수되는 애완용 동물에 대하여는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당해 동물 및 용기의 총 중량에 대하여 초과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징수한다. 단, 애완용 동물은 용기의 무게를 포함하여 종이 케이스를 이용하는 경우 5KG, 소프트/하드 케이스를 이용하는 경우 7kg 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 라. 애완용 동물이 기내 소란, 냄새 등 타인의 쾌적한 여행에 방해로 줄 경우 수면제 투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항공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 당해 동물의 운송으로 인하여 타 여객 또는 기타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여객이 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 32 조 (종가요금)

항공사는 종가요금을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종가요금 신고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제 33 조 (위탁 수하물의 인도)

1. 위탁 수하물은 그 운송을 위하여 항공사가 발행한 수하물표가 항공사에 반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한다.
2. 수하물은 수하물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만 특별히 여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발지에서 인도할 수 있다.
3. 항공사는 수하물표의 소지자가 당해 수하물의 정당한 권리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한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항공사가 본 조항에 의하여 수하물을 인도하는 경우, 수하물 인수자가 본 약관 제 37 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수하물은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의하여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4 조 (수하물표 분실)

수하물표를 분실한 여객에 대하여 항공사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당해 수하물을 인도함으로써 항공사가 입을지도 모를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하물을 인도할 수 있다.

제 35 조 (미인도 수하물 처분)

수하물 도착 후 1 주일 경과 후에도 여객으로부터 인도의 요구가 없는 수하물은 항공사가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어류 및 기타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도착 후 24 시간이 경과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 8 장 책임

제 36 조 (항공사의 책임)

1. 항공사는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2.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항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의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제 1 항, 제 2 항에 따른 항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기타 적용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가 제공하는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행하는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파손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실(이하 “손해”라 한다)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은 제 38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항공사는 여객의 휴대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손해가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휴대수하물의 탑재 또는 하기 중 항공사 직원이 행하는 서비스는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행위로 간주한다.
6. 항공사는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으로 인하여 입은 해당 여객의 부상 또는 수하물 손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여객 자신의 물품으로 인하여 타 여객의 부상 또는 수하물 손해 또는 항공사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여객은 타 여객 또는 항공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 및 비용을 타 여객 또는 항공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7. 항공사가 본 운송약관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손해 또는 특별손해 및 징벌적 배상에 대하여 항공사는 사전에 해당 손해의 발생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항공사는 운송물의 파손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 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항공사가 운송물의 파손 또는 분실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 가.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 나.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외의 자가 수행한 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 다.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
 - 라.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 마. 가~ 라 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사항
9. 전항의 책임은 제 38 조에 명기된 1,131SDR의 한도를 넘지 않는다.

10. 항공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의 직원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동 조치를 도저히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 본 약관 및 적용 태리프 상의 항공사의 면책 또는 책임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항공사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 37 조 (여객의 협조 의무)

1. 항공기 내에 있는 여객은 항공기와 여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나.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 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라. 여객은 운항 중 「항공안전법」 제 73 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마.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2. 여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여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항공기 내의 여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기장 등은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 1 항 가호부터 바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 가.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나.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 받거나 통보 받은 사람
 - 다.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 38 조 (수하물 손해배상 청구기한)

1.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해 이의 제기 기한은 다음과 같다.
 - 가. 여객이 위탁 수하물의 일부 분실 또는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항공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분실 또는 파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인도되었어야 할 날부터 21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운송물의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공사와 여객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제 1 항의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 없이 여객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하며, 여객은 항공사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제 39 조(항공사의 책임한도액)

1. 본 운송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운송과 관련한 항공사의 책임은 대한민국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운송약관에서 정한 항공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항공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항공사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에 해당하는 손해의 경우 여객 1 명당 113,100 SDR의 금액까지는 항공사는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4. 여객 1 명당 113,100 SDR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이나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또는 오로지 제 3 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SDR의 환율은 소송의 경우에는 최종 법원의 판결 일에 유효한 환율을 적용하고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환율을 적용한다.
6. 여객의 수하물에 발생한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여객 1 명당 1,131 SDR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7. 항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 손해액이 증명되어야 한다.
8. 항공사의 책임과 관련된 배상금의 지불지는 대한민국 (주)티웨이항공 본사로 한다.

제 40 조 (여객의 배상책임)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본 약관 및 이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항공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객은 해당 손해 일체를 항공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 41 조 (제소기한)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소는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어야 할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티웨이항공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 42 조 (약관의 정본)

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약관은 본 국문 판을 정본으로 한다.

제 43 조 (표제)

이 운송약관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